



2 체류기간 갱신, 체류자격 변경, 영주허가 신청, 자격외 활동허가, 재입국 허가 및 체류자격 취득

2-2 체류기간의 갱신

체류기간을 연장해서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갱신 수속을 해야 합니다. 신청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전(6개월 이상의 체류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전)부터 가능합니다.

만일 신청의 결과가 체류기간 내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최장 2개월간은 같은 체류자격으로 체재가 가능합니다.(2개월 이내에 신청 결과가 나오면 그 날이 체류 만료일이 됩니다.)

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의 지방입국관리관서에 문의해 주십시오.

필요한 서류	제출처/문의처	언제부터, 언제까지	수수료
1 체류기간갱신 허가신청서 2 사진 3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응하는 자료 4 여권 또는 체류자격증명서 5 체류카드 6 자격외 활동허가서 (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고 있는 경우) 7 신원보증서 등	제출처: 거주지의 지방입국관리관서 문의처: 거주지의 지방입국관리관서 또는 외국인 체류종합 인포메이션센터(4 체류에 관한 각종 문의 참조)	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전(6개월 이상의 체류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전부터)	허가될 때에 4,000 엔이 필요(수입인지)

